

실험실습 기자재관리 규정

□ 제정 : 2017. 05. 21

□ 개정 : 2017.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를 정확히 파악, 관리 보존하여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실험실습기자재라 함은 내, 외자로 구입된 모든 교육용 기자재와 수증품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실험실습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주관업무) 기자재의 전체적인 상황파악, 실존의 유무, 보관위치, 보관상태 및 자산관리시스템 관리, 기자재 유지관리 및 수리, 불용품처리, 사고방지의 조치,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 등 이에 부대되는 업무는 총무처 후생관재과에서 주관한다.

제2장 관 리

제5조(관리원칙) 총무처 후생관재과는 교내의 전반적인 실험실습기자재를 총괄 관리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실험실습기자재가 구입되는 즉시 자산관리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며, 후생관재과는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부서에서 비품 관련 내용과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한다.

②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여야한다.

③ 등록되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부서장이 교체 되었을 때
2. 도난, 분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이 있을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의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기자재 공동 활용) 본 대학교는 기자재 구입 및 설치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공용 활용을 추구한다.

제6조(관리조직)

① 기자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관리자와 사용책임자를 둔다.

② 사용관리자는 각 대학의 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되며 사용책임자는 각 학부(과)장 또는 기관의 부서장이 된다.

제7조(관리책임) 사용관리자와 사용책임자는 사용 기자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경제적 사용
3. 손, 망실품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4. 불용품, 폐품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5. 기타 제반사항

제8조(기자재의 단위) 기자재의 수량을 표시할 때에는 개, 대, 조, set 등으로 표시한다.

제9조(기기번호 부여) 모든 기자재는 본 대학교의 자산으로 등재(관리번호 부여)하고, 재물조사 필증을 부착한다.

제10조(수증) 외부로부터 기자재를 기증 받았을 경우에 수증부서는 지체 없이 수증물품 반입보고서(별지 3)를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작 및 조립) 실험실습 명목으로 제작 또는 조립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작 및 조립 보고서를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자재의 손, 망실 처리) 기자재가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자재(도난, 망실, 파손)사유서(별지 5)를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생관재과에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변상책임 및 포상) 기자재 사용 관리자, 실험·실습실의 관리책임자 및 연대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자재를 분실 및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 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관리가 매우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사례에 해당할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인수인계) 기자재 사용관리자 또는 사용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학부(과) 보관 실험실 습기자재 카드에 상호 날인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및 개조

제14조(보수의 의무) 사용관리자 및 사용책임자는 사용 중 또는 보관중의 기자재를 항상 점검하고 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실험실습기자재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조) 등록된 기자재 형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불용품 처리) 불용품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매각 및 폐기처분의 기록) 매각 및 폐기처분된 기자재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자산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구입된 모든 실험기자재는 소급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